



제39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희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522호)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885호)
- 김교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663호)
- 서일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426호)
- 김교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566호)

2022.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시억

목 차

I. 김희국의원 대표발의안(2111522)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양벌규정에 대한 면책규정 적용요건 완화(안 제90조제1항·제2항 후단 신설 및 단서 삭제)	2
 II.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안(2111885)	 5
1. 제안경위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
3. 검토의견	8
가. 위임내용 구체화 및 품질적합 증빙자료의 정보망 입력 의무화 (안 제57조제1항, 제57조제3항 신설)	8
나. 품질검사 대행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이용 의무화 (안 제60조제1항·제3항·제5항)	14
다. 품질검사결과 정보망 미입력등에 대한 벌칙(안 제31조제2항제7호바 목, 제89조제5호의2 신설)	18
 III. 김교홍의원 대표발의안(2112663)	 22
1. 제안경위	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
3. 검토의견	23
가.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를 민간공사로 확대(안 제65조의2) …	23

IV. 서일준의원 대표발의안(2114426)	26
1. 제안경위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6
3. 검토의견	27
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등록관리 및 과징금·지도감독권 등 부여(안 제26조제1항 외)	27
※ 참고자료	37
1.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인구 기준에 따른 대도시 현황	37
V. 김교홍의원 대표발의안(2114566)	38
1. 제안경위	3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8
3. 검토의견	39
가.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안 제91조의2 단서 신설) ··	39
※ 참고자료	44
1.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현황	44
2. 건설기술인 교육·훈련기관별 교육 실시 현황	46

I. 김희국의원 대표발의안(2111522)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희국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1. 7. 15.

다. 회 부 일 : 2021. 7.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것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행위에 기인하는 과실책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그런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사실이 명확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 명령, 요구와 승인을 통한 경우만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할 때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지시, 명령, 요구와 승인 등 위반사실이 명확할 때로 한정함으로써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신설).

3. 검토의견

가. 양벌규정에 대한 면책규정 적용요건 완화(안 제90조제1항·제2항 후단 신설 및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9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단 신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양벌규정) ① ----- ----- ----- ----- ----- ----- ----- 이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 명령, 요구 및 승인 등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 <단서 삭제>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제88조 또는 제8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후단 신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 이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 명령, 요구 및 승인 등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 <단서 삭제>

개정안은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 명령, 요구 및 승인 등을 한 경우에만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정함으로써 양벌규정에 대한 면책규정의 적용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양벌규정은 위법행위를 한 당사자 이외에 관계된 법인 또는 개인을 함께 처벌함으로써 위법행위 억제력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음.

개인 영업주에 대한 면책 가능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양벌 규정은 영업주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2007. 11. 29. 2005헌가10)에 따라 면책규정은 다수 법률에서 유사한 문구로 규정되어 있음¹⁾.

1) 면책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외에 「건축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 법제실(“헌재결정과 법제”, ‘20.2.28)에 의하면, 총 361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건축법」 제112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

개정안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은 행위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같이 위법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에서 ‘지시·명령·승인 등만 없으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적용요건을 완화할 경우,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책임까지 면책될 수 있어 양벌규정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다수 법률에서 면책규정을 두고 있어, 면책규정에 대한 개정은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다른 법률과 함께 종합적으로 개정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안(2111885)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홍기원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1. 8. 3.

다. 회 부 일 : 2021. 8.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이 현장에 반입된 건설자재를 품질검사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 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경우에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주요 이해관계자의 품질관리정보 접근이 어렵고,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해 결과가 공개되는 외부의뢰 시험도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

력 누락과 거짓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지속하여 적발되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건설자재·부재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재공급원 승인, 승인 취소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부재에 대해서도 입력·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며, 품질검사 입력시스템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한 사후입력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전 과정입력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현장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나.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빙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제57조제3항 신설).

다.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라.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받은 자가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3항 및 제89조제6호).

3. 검토의견

가. 위임내용 구체화 및 품질적합 증빙자료의 정보망 입력 의무화 (안 제57조제1항, 제5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u>공급 및 보관</u>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 ----- ----- -----공급(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 -----. ② (현행과 같음)

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신 설> ③·④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대장을 포함한 제2호에 적합하다는 증빙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

개정안 제57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중 건설자재·부재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57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란 시행령 제95조제1항²⁾ 각 호에 해당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등을 말하며,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등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5조(건설자재·부재의 범위) ①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닷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에이치(H)형강, 구조용 아이(I)형강,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구조용·기초용 강판, 고장력 볼트, 용접봉, 피시(PC)강선, 피시(PC)강연선 및 피시(PC)강봉. 다만, 가시설용(假施設用)은 제외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동 지침 제32조제1항에서는 수요자³⁾가 레미콘·아스콘을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이하 “자재공급원”이라 함)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급원 승인권자⁴⁾에게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승인권자가 승인, 승인 거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동 지침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는 수요자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자재공급원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57조제1항에서는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자재공급원 승인 등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고, 자재공급원 승인, 승인취소, 점검 등은 수요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⁵⁾이므로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⁶⁾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해 보임.

다만, 안 제57조제1항은 건설자재·부재의 공급과 관련하여 「건설공

3) 건설공사에 레미콘·아스콘 등을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4)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정의) 14. “공급원 승인권자”란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수요자가 신청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갖는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5) 현행법 제88조제5호에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57조제4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이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음.

6)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2조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위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020. 10.)

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상의 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문구를 추가하여 동 지침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이해되나,

자재공급원에 대한 정의가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재공급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누가 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을 하는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제32조(자재공급원 승인 등) ① 수요자가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이하 "자재공급원"이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급원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재공급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사전점검 실시대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보고한 점검표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전점검 시에는 골재시험 항목에 대하여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병행

2. 제33조에 따른 사전점검 실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서면검토 후 적절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시험 또는 확인

가. KS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또는 적정 품질관리 가능 여부

나. 공장의 제조설비 및 기술인력, 시험장비 등 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다. 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을 고려한 자재의 품질변화 가능성(초기경화 진행, 온도저하 등)

라. 사용 가능한 플랜트 믹서 및 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마. 폐자재 재생설비 구비 또는 적정 처리계획 여부

바.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 품질시험 성적서 내용과 해당공사 시방규정과 부합여부

(1)·(2) (생략)

사. 레미콘·아스콘 공장에서 생산자재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상 품질확인 등이 가능한 지 여부.

(1)·(2) (생략)

아. 골재는 공급규격 및 품질, 공급가능 물량 등을 확인하여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적합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③ 수요자로부터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을 받은 공급원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이 확인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급원 승인권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장 정기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2. 공장 점검시 지적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시정하지 아니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을 때

3. 배합비 조작 등 자재공급원 승인내용과 실제 납품 사실이 다른 경우
 4. 공급물량을 속여서 납품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5. 최근 2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량자재를 공급 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⑤ 자재공급원 승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수요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⑥ 공급원 승인권자는 자재공급원 승인과 관련하여 제출받은 내용을 공장별로 기록·정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사후 자재공급원 승인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자재공급원의 사전점검) ① 수요자는 레미콘 총 설계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의 총 설계량이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하려면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4조(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 ① 수요자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 중 레미콘 총 설계량이 3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 총 설계량이 5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을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 여부를 판단하여 정기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35조(자재공급원의 특별점검) ①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하 생략)

다음으로, 개정안 제57조제3항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 품질이 적합하다는 증빙자료(품질검사 대장 등)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⁷⁾에 입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건설사업자 등이 현장검사를 통해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검사결과를 종합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품질검사 결과가 인터넷 정보망에 공개되지 않아 주요 이해관계자가 품질관리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

7) CSI(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https://www.csi.go.kr/>
2019년에 구축된 동 시스템은 설계안전성검토, 안전관리계획서, 건설사고, 건설품질검사 관리 등 건설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관리·제공함.

이 품질검사 대장 등 증빙자료를 정보망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안 제57조제3항에서는 건설사업자 등이 “제2항제2호8)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를 사용 시 그 증빙을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2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는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자재·부재를 말하는 것으로, 안 제57조제3항에서 증빙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건설자재·부재의 범위와 동일하므로, 안 제57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은 제2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과 중복되는바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안 제57조제3항에서는 건설사업자 등이 증빙을 언제까지 CSI에 입력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한데, 안 제89조제5호의2에서 증빙자료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력 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8)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나. 품질검사 대행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이용 의무화
(안 제60조제1항 · 제3항 · 제5항)

현행	개정안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방법, 제4항에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 ----- ----- ----- ----- ----- -----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u>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u> --- ----- ----- -----
--	--

현행법 제60조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 등이 검사 장비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국립·공립 시험기관⁹⁾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건설사업자 등이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할 경우 최근에 구축된 정보시스템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품질검사를 대행의뢰하는 시점부터 검사결과를 입력하기까지의 전(全) 과정을 CSI를 통해 입력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품질검사 대행기관의 입력사항 누락, 거짓 검사성적서

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국가기술표준원
4. 시·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 국방시설본부
6. 조달청 품질관리단
7. 지방해양수산청
8. 국립·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발급, 검사결과 지연입력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품질검사 대행기관 품질시험 부실 주요 적발현황 】

(단위: 건)

평가항목	부실 내용	2018	2019	2020	계
품질시험검사 실적관리 미흡	○ 성적서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적정하게 입력하지 아니함	42	39	54	135
거짓성적서 발급 등	○ 시험검사자 1인이 통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일정으로 시험·검사하여 성적서 발급 ○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이 품질검사를 실시	2	2	6	10
계		44	41	60	145

다만, 현행법 제60조제3항에서는 품질검사 대행기관이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성적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¹⁰⁾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품질검사 대행기관이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언제까지 CSI에 입력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한바, 안 제89조제5호의2에서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력 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0) 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https://www.calspia.go.kr/>

이 시스템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 도면 등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과 건설업체 등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03년에 구축된 것으로, 품질검사와 관련해서는 인허가·보상 메뉴의 하위메뉴로 “품질검사 성적서”를 등록해 왔음.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에 앞서 소속기관인 지방국토청 발주 현장을 대상으로 2021년 6월부터 CSI에서 검사성적서 등록 및 자료공유 기능 등을 시범운영중이고, 기존 CALS에 등록한 품질검사 데이터를 CSI로 이전 완료('21.7.1.~'21.11.30.)하여, 법 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CALS에서 CSI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다. 품질검사결과 정보망 미입력 등에 대한 벌칙(안 제31조제2항제7호바목, 제89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6. (생략)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마. (생략) 바.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사. (생략) ③ ~ ⑤ (생략)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신설> 5의2. (생략)	제31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사.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57조제3항에 따른 증빙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정당한 사유없이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의3.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개정안 제31조제2항제7호바목은 안 제60조제3항에서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¹¹⁾가 검사결과를 입력해야 하는 정보시스템을 CALS에서 CSI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영업정지 규정에 반영한 것인데,

안 제89조제5호의2에서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31조제2항제7호바목의 영업정지 규정에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안 제89조제5호의2는 안 제57조제3항에 따른 증빙 또는 안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CSI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 미입력자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품질검사 제도의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에 대하여

11) 동 개정안 제31조 등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7939호, 2021. 9. 17. 시행)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용어가 변경됨

유사입법례들은 벌칙(형사처벌)이 아닌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60조제3항에서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CALS에 입력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2021년 11월)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형사처벌로 할지 또는 과태료 등으로 할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특정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다수의 유사입법례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사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재수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관련단체¹²⁾는 안 제89조와 관련하여 CSI 입력의무 위반은 단순한 행정적 신고의무 불이행인데 이에 대하여 징역·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정보망 미입력·거짓입력에 대한 처벌 관련 유사입법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대한건설협회

7. 제72조제2항¹³⁾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제8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제31조제1항¹⁴⁾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2. 제66조의2제2항¹⁵⁾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제62조제3항¹⁶⁾,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62조제18항¹⁷⁾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2조제6항¹⁸⁾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2조(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② 제1항 각 호의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1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15)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②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수위탁사업자”라 한다)와 폐수처리업자는 해당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6)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③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CSI를 이용하여 제출함

17)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CSI를 이용하여 제출함

18)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⑥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Ⅲ. 김교홍의원 대표발의안(2112663)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교홍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1. 9. 24.

다. 회 부 일 : 2021. 9.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정됨.

그러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외의 많은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휴일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공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범위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및 민간의 건설공사 휴무를 시행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요일을 휴무로 운영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실재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3. 검토의견

가.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를 민간공사로 확대(안 제65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공사----- -----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전에-----, ----- ----- ----- ----- ----- ----- -----

현행법 제65조의2는 2020년 6월에 신설(시행일: 2020. 12. 10.)된 조문으로, 이 조에서는 발주청¹⁹⁾이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건설공사의 일요일 휴무제를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현재 공공공사에서는 일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일요일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관리·감독 공백으로 민간공사 현장의 안전이

19)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일요일 건설공사의 휴무범위를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공공공사의 경우 주 5일·주 40시간 작업을 전제로 공사기간을 산정²⁰⁾하도록 하여 비작업일수(일요일 휴무)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민간공사는 비작업일수를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보장하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에 일요일 휴무제를 실시('20.12~)한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상황으로, 제도도입 성과 및 민간으로 확대 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민간공사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관련단체²¹⁾는 민간공사 일요일휴무제는 ① 민간 건설사업자의 사적자치의 영역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로서, ② 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공사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금전적 손해를 보기 때문에

20)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6조(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8조(비작업일수) ①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제9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수와 제10조에 따른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1조(작업일수)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경영협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일 새벽·야간 작업 등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무리한 공사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되고, ③ 건설 근로자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을 이유로 일요일 휴무제에 반대하며, ④ 전기·통신·소방공사업 등은 일요일 공사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건설업종에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함.

IV. 서일준의원 대표발의안(2114426)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일준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2. 1. 14.

다. 회 부 일 : 2022. 1.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발급 권한, 등록 말소 권한,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지도·감독권 등을 부여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8조, 제47조, 제80조의2, 제82조, 제83조 및 제91조).

3. 검토의견

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등록관리 및
과징금·지도감독권 등 부여(안 제26조제1항 외)

현행	개정안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u>시·도지사</u> 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② <u>시·도지사</u> 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도지사</u>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u>시·도지사</u> 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① ----- -----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 <u>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u> ----- ----- ----- -----. ② <u>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u> 은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u> ---. ----- --- <u>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u> 은 -----.

현행	개정안
⑤ <u>시·도지사</u>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제2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양도 등)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도지사</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u>시·도지사</u>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u>시·도지사가</u>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⑤ (생략)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u>시·도지사</u>는 건설엔지	⑤ <u>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u>은 --- ----- -----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29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양도 등) ① ----- ----- ----- ----- <u>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u>---. 1. 2.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u>은 --- ----- -----. ③ <u>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u>이 --- ----- ----- -----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u>시·도지사 또는 대도시</u>

현행	개정안
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략) ② <u>시·도지사</u>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7. (생략) ③ (생략) ④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u>시·도지사</u>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u>시·도지사</u>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제2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2조(과징금) ① <u>시·도지사</u>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	<u>시장</u>은 ----- ----- ----- ----- -----. 1. ~ 9.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u>은 ----- ----- -----. 1.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u>에게 ----- ----- <u>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u>은 ----- ----- -----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과징금) ① <u>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u>은 ----- ----- -----

현행	개정안
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6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공사 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 ④ (생략) ⑤ 발주청은 제4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 ----- -----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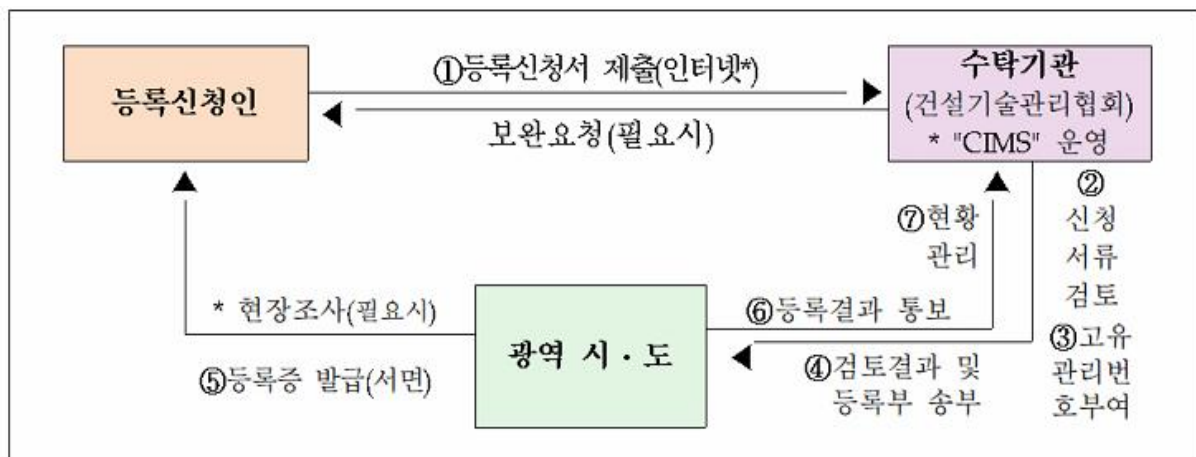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⑥ (생략) 제80조의2(제척기간) ① (생략) ② <u>시·도지사는</u>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제8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u>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3조(청문)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u>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1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u> 부과·징수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제척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u> ----- ----- -----. ----- -----. 1. 2. (현행과 같음) 제8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u> ----- ----- ----- ----- -----. 제83조(청문) <u>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u> ----- ----- -----. 제9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u> --.

현행법에서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제26조), 건설엔지니어링사

업자의 영업 양도 등(제29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제31조, 제80조의2),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제32조, 제91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감독 등(제38조), 영업정지처분 요청 접수(제47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제82조), 등록취소 시 청문(제83조) 등에 대한 권한은 국가(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현행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본금, 기술인, 사무실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요건이 변경된 경우 50일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²²⁾을 내리고 있음.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관리 절차>



* CIMS(종합정보관리시스템, Complex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정보, 실적정보, 상벌사항 등 현황을 관리하는 전자운영체계

22)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은 이러한 시·도지사 또는 국가의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및 행정처분 등 17개 사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²³⁾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

< 권한이양 대상 사무 내용 >

사 무 내 용	現 주체	이양 후 주체
10개 사무 (법 제26조, 29조, 제31조, 제47조, 제80조의2)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증 발급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변경등록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휴업·폐업신고 접수·처리, 등록말소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변경등록·휴업·폐업 현황 통보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영업 양도·합병신고 접수·수리·통지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 및 현황 통보 ▶ 건설엔지니어링업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명령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 통보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제척기간	시·도	시·도, 50만 대도시
5개 사무 (법 제38조, 제82조, 제83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무실 또는 공사현장 출입 ▶ 권한 등의 위임·위탁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취소시 청문	국가, 시·도	국가, 시·도, 50만 대도시
1개 사무 (법 제32조)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징수	시·도	시·도, 50만 대도시
1개 사무 (법 제91조)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국가, 시·도	국가, 시·도, 50만 대도시

23)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2.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 따른 권한이양은 사무처리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증대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추어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7조²⁴⁾의 자치분권의 기본이념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두도록 한 취지에 맞게 대도시의 장에게 적절한 사무를 배분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제82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같은 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2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록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82조제2항에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협회,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제84조제5호에서 대도시의 시장이 위탁한 협회 등에서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수 정 의 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8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u>시·도지사</u>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제8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 ----- ----- ----- --- <u>시·도지사, 대도시 시장</u> ----- ----- -----.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 -----.	----- ----- ----- -----.
1. ~ 4.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제82조제2항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협회,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u>		5. ----- -- <u>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u>

셋째, 안 제2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²⁵⁾으로 종전 제175조는 제198조로 조문이 이동하였으므로, 안 제26조제1항의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제175조에서 제198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개정법률안²⁶⁾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음.

2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

26)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2022. 1. 25., 의안번호 제14563호)

참고 1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인구 기준에 따른 대도시 현황

□ 인구 기준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특례시’는 연도 말 인구* 기준으로 2년 연속 50만과 100만 이상인 市를 의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 주민등록인구+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인명부)+외국인(외국인등록대장)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 4개

구 분		2020.12.31. 기준				2021.12.31. 기준			
		주민등록인구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합 계	주민등록인구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합 계
경기도	수원시	1,186,078	22,803	35,835	1,244,716	1,183,714	23,556	33,251	1,240,521
	고양시	1,079,216	6,868	11,522	1,097,606	1,079,353	6,710	10,986	1,097,049
	용인시	1,074,176	7,907	16,731	1,098,814	1,077,508	7,918	16,157	1,101,583
경남	창원시	1,036,738	3,351	13,469	1,053,558	1,032,741	3,337	12,860	1,048,938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13개

구 분		2020.12.31. 기준				2021.12.31. 기준			
		주민등록인구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합 계	주민등록인구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합 계
경기도	성남시	940,064	11,430	15,184	966,678	930,948	11,241	14,089	956,278
	안양시	550,027	4,937	6,543	561,507	547,178	4,775	6,071	558,024
	부천시	818,383	18,385	24,405	861,173	806,067	19,308	23,779	849,154
	평택시	537,307	10,526	23,168	571,001	564,288	11,673	23,758	599,719
	안산시	654,915	32,140	51,270	738,325	652,726	35,274	47,412	735,412
	남양주시	713,321	1,986	7,141	722,448	733,798	2,072	7,058	742,928
	시흥시	500,895	22,274	32,410	555,579	512,030	23,991	31,523	567,544
	화성시	855,248	10,184	37,636	903,068	887,015	11,509	35,077	933,601
충북	청주시	844,993	5,510	12,534	863,037	848,482	6,104	12,349	866,935
충남	천안시	658,808	8,492	18,188	685,488	658,486	8,801	17,944	685,231
전북	전주시	657,432	920	8,745	667,097	657,269	886	8,901	667,056
경북	포항시	502,916	669	5,875	509,460	503,852	657	5,790	510,299
경남	김해시	542,338	4,309	16,904	563,551	537,673	4,567	16,046	558,286

V. 김교홍의원 대표발의안(2114566)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교홍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2. 1. 26.

다. 회 부 일 : 2022. 1.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교육대상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미이수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교육대상자가 이직이나 퇴직으로 건설업 등에 종사하지 않아 건설기술 관련 교육·훈련 이수가 어려운 상황이나,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교육대상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유예 대상인 교육대상자 중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다시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연장하여 건설기술인 능력 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 단서 신설).

3. 검토의견

가.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안 제91조의2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단서 신설>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 ----- ----- ----- ----- --. 다만,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업무를 다시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현행법에서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제20조제2항²⁷⁾),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91조제3항제1호²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7)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28)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2.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 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2014년 5월에 시행령이 개정²⁹⁾되어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각 35시간 이상 받도록 하되, 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3년 이내에 각 교육을 35시간씩 받도록 유예하였고, 2017년 9월에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³⁰⁾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과태료 규정은 유지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위원회 대안이 2018년 5월에 가결되었음.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의 변경 연혁]

- 1989.10. : 건설기술자 5년마다 교육·훈련 이수(2주 이상)
- 1999. 2. :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 교육·훈련 이수(기본교육 2주 이상, 전문교육 1주 이상)
- 2008. 7. :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건설공사 수행기간이 3년이 되기 전 교육·훈련 이수(기본교육 2주 이상, 전문교육 1주 이상)
- 2014. 5. :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1주 이상), 전문교육(1주 이상) (기본교육 2주 → 기본교육 1주) 이수, 교육 미이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에서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2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3. 시행) 부칙 제10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품질관리자가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각 35시간씩 받아야 한다.
- 30) 건설기술인이 교육 참석시 업무공백으로 건설공사에 차질을 빚는 등 부담이 되므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9. 21. 전현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09523호) 이 발의되었으나, 과태료를 폐지할 경우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줄어들어 건설기술인의 능력개발에 역행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과태료 규정은 유지하기로 한 바 있음.

자 3년간 유예

- 2017. 5. : 최초교육 연기신청 방안 시행(수탁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 연기)
- 2017. 9.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규정 폐지 및 역량지수 인센티브 부여)
- 2018. 5.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가결(과태료 규정 유지 및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신설)

현행법 제91조의2에서는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다시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려는 것임.

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과태료를 납부한 건설기술인과 개정안의 적용을 받아 과태료 부과를 유예받는 건설기술인간 형평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음.

구체적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인 2021년 12월 31일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

술인은 현행법에 따라 건설기술 업무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퇴직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기납부한 기술인과 동 개정안의 적용을 받아 다시 건설기술 업무에 종사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받은 기술인이 있을 수 있는바³¹⁾, 동일한 시점(2022년 1월 1일)에 동일한 위반 행위(교육 미이수)를 하였으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³²⁾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목적이 건설기술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인데, 퇴직 또는 이직(非 건설업 종사)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건설기술인들은 교육의 필요성이 당장 크지 않은바, 그들에게 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훈련제도의 취지 및 실효성, 이·퇴직자들의 경제적 부담³³⁾

31) 예들들어, 시·도 및 지방국토관리청별 과태료 부과 절차의 진행상황에 따라 동 개정안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기부과한 시·도 등과 부과하지 아니한 시·도 등이 있을 수 있음

32) 국토교통부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의 현황을 파악하여 실제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 처분을 하기까지 행정절차상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종료 후 2022년 3월말 기준으로 교육 미이수 기술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함.

33) 의무교육인 기본교육(35시간) 및 전문교육(35~105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1~3주동안 휴가를 내야 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없고, 건설업 종사시 해당 사업주가 부담하던 교육비(28~55만원/35시간)를 이·퇴직한 기술인의 경우 자비로 부담해야 함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이·퇴직 기술인이 다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필요가 있어 보임.

관련단체³⁴⁾는 이직하거나 퇴직한 건설기술인에게 건설기술 교육을 강제할 실효성이 부족하고, 교육이 생업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76

34)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참고 1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현황

① 연도별 교육·훈련 이수 현황

2022.1.1.기준, 단위 : 명)

구 분	2014.5.22	2016.10.31	2018.12.31	2019.9.23	2020.12.31	2021.12.31
건설기술인 계	654,812	774,477	797,222	818,500	859,798	979,858
교육 이수자	282,134	311,042	435,741	445,519	471,344	592,036
교육 미대상자	-	198,129	257,366	247,357	249,082	347,650
과태료 부과 대상자	-	265,306	104,115	125,624	139,372	40,172

* 2014.5.22. 현황의 경우 교육이수기한의 연기(2017.5.22.)에 따라 미이수자 없음

② 과태료 부과 대상자 현황

(2022.1.1.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교육·훈련 미이수자	
		퇴직·이직 등	건설업 재직자
건설기술인 계	979,858	-	-
교육 이수자 및 교육 미대상자	939,686	-	-
과태료 부과 대상자	40,172	7,935	32,237

* 퇴직·이직자의 경우 경력신고 유·무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③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세부 현황

(2022.1.1.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총 계	40,172	31,215	211	8,746
기본·최초교육	31,140	26,648	98	4,394
계속교육	9,032	4,567	113	4,352

4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이수 현황

① 연도별·월별 현황

(2022.1.1. 기준, 단위 : 건)

년 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5년	10,389	7,405	5,986	5,423	4,311	3,673	4,469	3,183	3,914	4,063	4,683	5,569	63,068
2016년	8,942	7,344	6,309	6,302	5,159	5,235	6,393	4,156	5,849	6,831	8,791	12,130	83,441
2017년	19,088	31,854	61,276	88,770	76,042	22,575	17,250	13,832	15,588	9,418	12,729	12,388	380,810
2018년	14,006	14,055	15,211	12,680	11,009	11,193	7,774	7,061	6,798	6,873	9,399	8,598	124,657
2019년	13,246	11,635	12,271	8,747	8,622	7,642	8,670	7,450	6,785	8,079	9,875	10,181	113,203
2020년	11,025	13,162	19,378	19,393	16,282	15,355	17,698	10,226	11,527	10,654	13,613	16,116	174,429
2021년	18,508	15,881	14,970	13,604	17,550	17,064	15,827	19,567	13,201	17,735	38,548	123,758	326,213

② 연도별·교육방식별 현황

(2022.1.1. 기준, 단위 : 건)

연 도	집체교육	원격교육	계
2015	56,737	6,331	63,068
2016	71,245	12,196	83,441
2017	135,234	245,576	380,810
2018	76,387	48,270	124,657
2019	68,850	44,353	113,203
2020	17,325	157,104	174,429
2021	419	325,794	326,213

* 타 수탁기관 등록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참고 2

건설기술인 교육·훈련기관별 교육 실시 현황

(2021.1~12월 기준, 단위 : 건)

교육기관		교육이수	
합계		계	326,213
		집체	419
		원격	325,794
종합 교육 기관 (7)	소 계	계	319,153
		집체	39
		원격	319,114
	건설기술교육원	집체	-
		원격	205,337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집체	-
		원격	31,048
	건설산업교육원	집체	-
		원격	42,927
	경북대학교	집체	25
		원격	-
	스마트건설교육원	집체	-
		원격	3,499
전문 교육 기관 (8)	소 계	계	7,060
		집체	380
		원격	6,680
	공간정보산업협회	집체	380
		원격	-
	국민재난방지협회	집체	-
		원격	-
	국토안전관리원	집체	-
		원격	33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집체	-
		원격	5,267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집체	-
		원격	757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집체	-
		원격	36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집체	-
		원격	-
	한국능력개발원	집체	-
		원격	587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